이 주 구 금 대 응 네 트 워 크
Network for the Action against Immigration Detention (NAID)

일자: 2025. 4. 30.(수)
발신: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수신: 제 언론사 인권·사회·법조·국제 담당 귀하
제목: [취재요청]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
문의: 김연주(010-8706-3382), 서준희(010-9385-6200)

1. 이주민 인권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5년 4월 30일(수)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에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심, 서울중앙지법 2024나29351 사건) 판결 선고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이 개최하였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함께 지난 수년간 재판 과정을 함께 해온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이번 선고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시: 2025년 4월 30일 (수) 오후 2시 30분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주최: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순서
- 국가배상청구소송 법적 쟁점 / 이한재(공익법단체 두루)
- 국가배상청구 당사자 발언 / 무라드(성미산학교, 동물교회 참여자 대독)
- 연대 발언 / 주원(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 마무리 발언 / 삼일(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 서준희(DLG공익인권센터), 윤성민(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 항소심 판결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제304호 법정**

3. 본 사건은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고통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소송으로, 1심에서 일부 배상 판결이 인정되었고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가의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단지 과거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이주민 구금 제도의 인권적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공적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법률·인권적 평가와 함께, 피해 당사자 나스리 무라드 씨 발언 및 인권단체의 입장을 공유하였습니다.

4. 이 사안은 국내외에서 주목하는 이주민 인권과 국가폭력 책임 규명에 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 법적 쟁점

공익법단체 두루 이한재 변호사

2021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미 사라졌을 것이라 믿고 있었던 공권력의 개인에 대한 야만적인 학대가 자행되는 CCTV 화면이 전국에 송출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나스리 무라드씨는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외국인보호소 운영 실태와 수용된 외국인의 인권 보장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가혹행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장기간의 독방 감금(특별계호), 그리고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1. 출입국 공무원들의 가혹행위를 인정한 1심 판결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9759)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총 18회의 특별계호 중 4회에 대해 법정 기간 상한(연장 없는 5일)을 초과한 점,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장비(발목 수갑, 케이블 타이, 박스테이프)를 사용한 점, 그리고 소위 '새우꺾기' 방식으로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원고에게 총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독방 구금(특별계호)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유 고지 및 의견진술 기회 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모두 사실로 밝혀진 본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항소심은 이러한 1심 판결의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 항소심 쟁점 1: 위법한 특별계호(독방 감금) 처분-절차적 권리의 총체적 부재

원고는 보호소 수용 기간 중 총 18회, 합계 63일이라는 장기간 동안 특별계호, 즉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원고에 대한 특별계호는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 그리고 이러한 행정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절차적 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자행되었습니다.

-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사유 설명 의무 위반:**
 - 외국인보호규칙 등은 특별계호 시 그 사유를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지가 아닌, 실질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설명 의무입니다.
 - 그러나 피고 측은 원고의 모국어인 아랍어 통역 제공은커녕,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원고에게 영어 또는 한국어로 설명했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이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설명이라 볼 수 없습니다.
 - 교부되었다고 주장하는 '특별계호 통고서' 자체도 문제입니다. 사유란이 아예 비어 있거나, 단순히 '기타'라고만 표시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 없이 '난동', '지시 불응' 등 단어 하나만 체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자신이 어떤 행위로 인해 이러한 처분을 받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 심지어 통고서가 교부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처분 이후에야 통고서가 출력되거나, 처분일 며칠 전에 미리 출력된 경우도 있어 정상적인 절차 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견 진술 기회 미보장:

- 구 외국인보호규칙은 특별계호 시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원고는 단 한 번도 이러한 기회를 공식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통고서 전달 사실(이마저도 18회 중 1회만 증거로 제시됨)을 근거로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에는 통고서 수령 여부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예: 수령 확인 서명란)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원고 사건 이후 문제 제기를 통해 2022년 12월에서야 규정 개정으로 보완되었습니다.

특별계호(독방 구금)의 사유 미비: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수용된 외국인에 대하여 징벌을 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외국인보호소에 이른바 &독방& 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긴급한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 방지를 위함에 불과합니다. 외국인보호규칙은 특별계호를 징계나 징벌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특별계호 결정 및 통고서 작성이 실제 계호 개시 또는 연장보다 며칠 앞서 이루어진 정황 등은, 피고가 원고의 과거 행위를 문제 삼아 사실상 징벌로서 특별계호를 남발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항소심 쟁점 2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 국가기관에 의한 2차 가해

피고(법무부)는 원고 측이 외국인보호소 내 가혹행위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보호소 내 CCTV 영상 여러 개를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원고의 과거 경범죄 전력까지 포함한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광범위하게 유포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기자에게는 개인 카톡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사진 등을 유포한 정황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배포한 사진은 &새우꺾기& 가해 사건이 있었던 날과 관계 없는 과거의 것들로, 사건과 관계 없는 다른 사건을 통해 새우꺾기 사건 자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명백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이러한 목적 외 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 CCTV 설치 목적은 '피보호자의 안전 및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이지, 특정인의 행적을 외부에 공개하여 기관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피고의 행위는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적법한 동의 또는 동의 간주 불가:

- 피고는 CCTV 영상 활용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 없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른바 &새우꺾기&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한 것이 이후 법무부가 원고의 알몸 사진 등 민감한 사진 16장을 공개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의 성격, 범위, 목적, 공개 주체,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 등 모든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포괄동의 금지 원칙과 자기정보통제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행위는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명백히 벗어납니다.

동의 예외 사유 미충족:

-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목적 외 이용·제공을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또한, 해당 정보 제공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식별 정보를 가리거나, 민감한 과거 전력을 제외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입장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및 위법성 조각 불가:

- 피고의 행위는 원고를 사회적으로 비난받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며, 실제로 국내외 언론 보도 및 악성 댓글 등으로 이어져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가족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는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행위입니다.
- 피고는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공적인물이 아니며, 공개된 정보 중 상당 부분은 사적 영역에 속하고 공적 관심사와 무관합니다. 익명 보도의 원칙을 사실상 위반했으며, 국가기관의 발표는 그 신뢰도와 파급력이 크기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공익 목적 항변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고에게 행해진 일련의 위법행위들을 살펴보면, 출입국 관련 기관에서 독방 구금, 강제력 행사 등이 얼마나 체계 없이 함부로 이루어졌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잘못이 밝혀지자 이를 반성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사건과 상관없는 피해자의 치부를 비난하여 곤경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부디 원고가 자신에게 발생한 위법행위를 확인받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한 배상을 받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게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배상청구 당사자 발언

나스리 무라드(대독: 성미산 학교 & 동물교회)

Hi this is Mourad, not M, A or X.

안녕하세요, M, A, X가 아닌 무라드입니다.

I was tortured inside Hwasung Guantanamo by criminals wearing official uniforms of the Ministry of Injustice, engaging in clear state monsters' violence and torture.

저는 화성 관타나모 안에서 법무부 공식 제복을 입은 범죄자들에 의해, 국가 괴물들이 저지른 명백한 폭력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Today after years of fighting, I welcomed the court judgment acknowledging that the torture I was under caused a significant physical and emotional pain, violated my basic human dignity.

오늘, 오랜 세월 투쟁한 끝에, 제가 겪은 고문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마침내 인정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On the other hand, the justice failed to provide a real reparation under the UN standard.

The compensation granted is completely inadequate, given the severity of the torture.

한편, 이번 판결은 유엔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배상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고문의 극심한 피해를 고려할 때, 지급된 보상은 전혀 불충분합니다.

The perpetrators have not been held accountable. There have been no criminal charges, total impunity, no official apology from the Ministry of Injustice and no rehabilitation.

가해자들은 여전히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해자들은 완전히 면책되었고, 법무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나 어떠한 형태의 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I survived the torture, but I refuse to survive injustice. I will continue to fight for a real justice.

저는 고문을 견뎌냈지만, 부당함을 견디지는 않겠습니다.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연대 발언

주원(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국민은 '외국인보호시설'에 갇힐 일이 없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비국민수용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니, 알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살았습니다. 무라드 님 그리고 무라드 님과 연대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비로소 "비국민수용소"라는 공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비국민에게 가해지는 연쇄적인 국가폭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신분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무라드 님과 연대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 덕분에 비로소 이주구금의 국가폭력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무라드 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무라드 님에 관한 이야기는 무라드 님과 함께해온 동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2023년 말 IW 31 활동을 함께하게 되면서, 동료들로부터 무라드 님과 연대해온 일에 관해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무라드 님은 이미 한국을 떠났고, 무라드 님이 떠난 자리에서 살아가는 동료들이 무라드 님과 연대해온 일이 무슨 의미였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무라드 님이 비국민수용소를 벗어나 '보호일시해제자'로 살아간 때조차, 대한민국은 '열린 하늘의 감옥과 부정의', 확장된 비국민수용소에 불과했기에, 무라드 님과 연대하는 일은 곧 무라드 님과 함께 생존하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생존하는 일은 많은 조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무라드 님과 연대해온 많은 이들은 무라드 님을 '조력하는 활동', 차마 조력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워 '옥수수'라고 불러야만 했던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무라드 님과 함께해온 이들이 옥수수에 관해, 어렵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바를 들었을 때, 마중 활동 6개월 차였던 저는, 겨우 당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비국민의 곁에 선다는 일이 무엇인지 배워갔습니다.

어느새 마중 활동 1년 8개월 차가 된 저는, 옥수수에 관해, 비국민의 곁에 함께 서는 일에 관해, 과거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무라드 님과 함께 걸어야 했던 지난한 길, 그것을 저도 많은 이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활동을 이어 나가며 몸과 마음이 많이 다치면서, 비국민의 곁에 함께 서는 일을 이어 나가는 것이 너무 힘겹다는 생각이 부쩍 자주 듭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변의 동료들을 바라보고, 무라드 님과 오랜 기간 함께 싸워온 여러분을 떠올립니다.

체류기한이 지났는데도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비국민이 잡히고, 갇히고, 내쫓기고 있습니다. 비국민에게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무라드 님이 피해를 배상 받는 법적 싸움은 오직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라드 님이 여전히 가해자들에게 사과 받지 못한 지금, 무라드 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싸워온 여러분의 고민 또한 결코 끝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무라드 님과 함께 맺어온 관계가 무엇인지, 무라드 님과 함께하는 일이 무엇인지, 법적 결론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괴롭고 어려운 질문들과 마주하리라고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국민이 갇히는 세계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질문들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질문들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어렵다고 느껴질 때,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홀로 버거워하는 대신, 함께 질문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어려운 싸움을 함께해온 무라드 님, 그리고 그의 연대자, 동료 모두에게, 앞으로도 함께 싸우자고, 비국민을 향한 국가폭력에 저항하며, 내쫓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 건네봅니다.

마무리 발언

삼일(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024년 10월 18일에 발족하였고 전국적으로 17개 단체와 연대체가 함께 합니다.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나스리 무라드님에 대한 고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했던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대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이주구금문제 전반으로 운동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저는 공대위활동을 하면서야 외국인보호소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불끈하기도 했습니다.

무라드님의 소식을 처음 접한 것은 소수자난민네트워크를 통해서였습니다. 이후 마중의 방문과 언론을 통해 외국인보호소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보호'가 아닌 '구금'의 공간의 현실을 다시금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외국인'들에게 '국가'가 자행하는 '통제'와 '억압', '폭력'들…. 그곳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요원한 일일까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문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받는 일이 왜이리 어려울까요? 뒷짐지는 정부를 개탄하며 네트워크는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시시각각 대응하고 싸워야했습니다.

네트워크는 그 과정에서 무라드님으로부터 용기를 배우고 얻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고문피해자'로 정체화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나 규탄집회, 거리 행진을 할 때마다 제일 앞에 섰고 제일 크게 외쳤습니다. 그가 이주민들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이 사회를 향해 "FREEDOM & JUSTICE!"라고 외치면 우리도 따라 외쳤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운 그에게 감사합니다. 그가 싸운 이유는 단지 혼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또 많은 동료들로부터 어떻게 당사자와 소통하고 연결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IW31은 경계를 넘고 관계를 만드는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봉투가면을 쓰고 시내를 함께 행진하는 것은 무라드님의 아픈 경험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성미산학교 학생들은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한 무라드님에게 운동화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덤 앤 저스티스'란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요. 모로코 음식만드는 법을 함께 배우고 나누어 먹는 기회도 열었습니다. 이웃과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의 의미를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는 사태를 겪으면서 사방이 벽에 가로 막힌 것 같아 갑갑합니다. 날마다 분노하고 걱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출입국관리법은 악법으로 개정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77일간 강행하겠다는 법무부의 정부합동 단속으로 우리의 이웃이 구금되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납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송환도 자행됩니다. 일부 언론은 법무부의 차별과 혐오 선동 문장들을 받아적기만 합니다. (오늘 이자리에 와주신 기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강조하는 '공공질서와 안전유지'를 해치는 원인이 바로 국가라는 점 그자체가 모순입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안만 조장할 뿐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무라드님의 싸움은 그가 직접 언급한 것처럼 계속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주주금대응네트워크 역시 무라드님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이주구금 운동이 관련 활동가에게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트워크는 더 많은 동료 시민들이 곁에 함께 하도록 이주인권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 일에 앞으로도 힘쓰겠습니다. 공론장을 만들고 이주민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도록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더 해야할 지 막막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탄핵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을 통해 희망을 찾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읽기도 했습니다. 더 두드리고 더 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더 보고픈 무라드님! 재판과정내내 애쓰신 법률대리인단 분들, 이웃이자 동료인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많은 '우리'가 함께 외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번 함께 외쳤는데요. 한번 더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FREEDOM & JUSTICE!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문

낭독: 윤성민, 서준희(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독방에서 한 외국인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등 뒤로 연결되어 몸이 꺾인 일면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된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면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나스리 무라드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이후부터 기저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물, 음식을 제공해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나스리 무라드씨의 기본적인 요구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스리 무라드씨가 소란을 일으킨다며 총 18회, 63일간의 독방구금과 15회의 위법한 장비사용,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커녕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고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나스리 무라드씨는 2022년 12월 대한민국을 상대방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24년 5월 선고된 1심 판결은 나스리 무라드씨에게 행해진 가혹행위가 위법이라 인정하며 대한민국이 나스리 무라드씨에게 1000만원의 배상을 할 것을 주문했다. 1심은 총 18회의 독방구금(특별계호) 중 네 차례의 경우에는 특별계호 처분이 법정 시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총 15차례 가해진 보호장비 등을 사용한 강제력 행사 행위에 대하여 법령에 없는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장비를 사용한 사실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세 차례 가해진 &새우꺾기& 가혹행위에 대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로서 그 자체로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나스리 무라드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대한민국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1심은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독방구금(특별계호)을 하는 경우에 &징벌적 목적& 으로 할 수 없으며, 독방구금(특별계호)의 사유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무부가 나스리 무라드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스리 무라드씨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항소를 제기하여 위법함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였다.

나스리 무라드씨의 고문피해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징벌적 목적으로 독방구금(특별계호)이 사유 설명 의무나 의견 진술 기회에 대한 노력 없이 무분별하게 가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민감정보들을 동의도 받지 않고 절차적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자신들의 보도자료에 활용하며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법무부와 소속기관들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확인하여 지금도 무한반복되고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향후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에 이번 재판의 의의가 있다.

나스리 무라드씨에게 발생한 이 끔찍한 국가폭력이 세상에 알려진 뒤, 법무부는 독방구금(특별계호) 및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오랜 투쟁으로 제도변화의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었지만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반하는 위헌적인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지난 2월 27일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통과되어 곧 다가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가는 장기구금 이주민을 강제로 송환하겠다며 위법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독방구금을 남용하는 등 심각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국가폭력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FREEDOM & JUSTICE&를 외치던 나스리 무라드씨는 한국을 떠나 이제 우리 곁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와 함께다.

외국인보호소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과 국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 **법원은 이번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나스리 무라드씨에게 가해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확인하라!**

- **국가의 권력남용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라!**
- **국가는 나스리 무라드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고 직접 사과하라!**
- **외국인보호소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국가폭력을 멈춰라!**
- **이주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구금된 이주민을 보호해제하라!**

2025년 4월 30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